

! 안전보건교육과 공표

✓ 안전보건교육

중대산업재해 발생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의무
(교육비용 본인부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주요절차

- 교육기관, 교육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대상자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관·법인의 경영책임자)에게 통보, 연기요청 (1회에 한함) 및 승인 여부 통보와 안전보건교육이수 확인서의 발급요청 및 발급에 관한 절차 포함

✓ 공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1년간 게시, 소명기회 부여)

- 해당 사업장의 명칭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일시·장소
-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의 수
- 중대산업재해의 내용과 그 원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의 위반사항 포함)
-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5년 내 중대산업 재해의 발생 여부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업·기관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안전보건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경상남도 노동정책과 중대산업재해담당 TEL 055.211.3975



중대재해처벌법 담당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

구분	위치	연락처	관할지역
서울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서울시	02-2250-5897	서울시
중부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인천시	032-460-4428	인천시·부천시·김포시·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고양시·파주시
강원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춘천시	033-269-3581	강원도
경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경기도 수원시	031-259-0249	수원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양평군·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시흥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부산시	051-850-6483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대구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대구시	053-667-6388	대구시·경상북도
광주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광주시	062-975-6349	광주시·전라남도·전라북도
제주산재예방 지도팀	제주시	064-728-7131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대전시	042-480-6358	대전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022. 1. 27.

단,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 1. 27.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산업재해 부분)

※ 시행일 : '22. 1. 27.(50인 미만 사업장 등 '24. 1. 27.)

- ✓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
-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사망시	그 외	양벌규정(법인)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small>*징역과 벌금은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시에는 형의 1/2까지 가중</small>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



⚠️ 중대산업재해란?

✓ 산업재해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부상·질병을 의미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	---------------------	-----------------------------

* 1년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약 200여개의 화학적 인자)

-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 독성간염
- 혈액전파성 질병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에 한함)

- 렙토피라증
- 탄저·단독·브루셀라증
- 레지오넬라증
- 감압병·공기색전증
- 산소결핍증
- 급성방사선증·무형성빈혈
- 열사병

⚠️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란?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



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은 위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경영책임자 해당)



※ 단,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음

- ✓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4가지 조치 의무



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및 단계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제공자를 모두 포함

0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2 안전·보건업무 총괄·관리 전담조직 (500인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배치 (산업안전보건법 상 기준 이상)
-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8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상황 포함)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9 도급, 용역, 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업무 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 이행 여부 점검
*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

0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03

중앙행정기관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0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안전·보건 법령상 지정기관에게 해당 법령에 관한 점검 위탁가능)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2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 5년간 보관하여야 함(소상공인 제외)